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변경 절차 마련 등〉
■ 이진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21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근거 마련 (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견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10.

다. 회 부 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 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llegible]

현행	개정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u>제4항에</u>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⑧ (생략)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③·④ (생략)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u>제3항에</u>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⑦ ----- --<u>제6항에</u>----- ----- ----- ----- ----- --. ⑧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중장기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u> ④ <u>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⑦ -----<u>제5항에</u>----- -----<u>수립, 변경 및 추진</u>----- -----.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현행	개정안
(생략)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u>제7조제5항에</u>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2의2. (생략) 2의3. <u>제7조의2제3항에</u>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의4. ~ 7. (생략)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u>제7조의2제3항에</u>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제7조제7항에</u>----- -----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u>제7조의2제5항에</u>----- ----- 2의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제7조의2제5항에</u>----- ----- ----- ----- ----- ----- -----.

현행	개정안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학기술투자자의 확대) ① (생략)	제21조(과학기술투자자의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의 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제7조의 2제5항에-----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¹⁾하고 있으나, 기 수립된 계획의 변경에 관한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6.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사례를 살펴 보면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²⁾ 정책방향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한 사례가 존재함.

- 최근 인공지능(AI), 양자 등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과학기술 혁신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타 분야의 중장기 법정계획에서도 정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절차를 명시하면서, 경미한 사항

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001.12.)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재수립(2003.5.)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007.12.)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재수립(2008.8.)

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례³⁾가 대부분임.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③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⑤ (생략)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략)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⑤ (생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다만, 안 제7조의2제3항은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중장기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 여건 변동 등 투자전략만을 단독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는 중장기 투자전략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하는 점,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제외한다면 양 계획이 연계되어 변경되는 것이 현행 법체계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규정 방식은 타당성이 인정됨.

○ 한편, 본 개정안의 취지인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적기 대응’을 고려할 때, 현행 제8조⁴⁾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4)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획’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음. 동 종합계획 역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근간이 되므로, 상위 계획과의 연동 등의 사유에 한하여 그 변경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의 변경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